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
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이봉준 의원 외 25명

나. 의안번호: 제3434호

다. 발의일자: 2026. 2. 9.

라. 회부일자: 2026. 2. 12.

2. 제 안 사 유

- 정부는 기존 '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'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,

2025년 11월에 그 명칭을 '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' 및 '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'로 각각 변경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을 개정하였음.

- 이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'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'를 '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'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의회의 서울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8조제3항, 안 제9조제3항, 안 제9조의2제1항부터제3항까지, 안 제10조).
- 나.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·개선 권고 규정 신설(안 제9조제4항).
- 다. 위원회 위원에 장애인 추가(안 제10조제5항).
- 라. 기타 정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리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.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개정¹⁾에 따라 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 명칭을 ‘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로 변경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·개선 권고 규정을 신설하며, 위원회 위원에 사회적 약자(장애인)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‘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는 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²⁾」를 근거로 구성되었음(‘22년 9월).

동 위원회는 총 40명(당연직 11명, 위촉직 29명)의 위원으로 구성, 3개의 분과 위원회(온실가스 감축, 기후위기 적응, 기후예산제 운영)를 두고 있으며, 관련 주요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탄소중립 관련 행정계획 및 조례 검토 등을 자문해 오고 있음.

-
- 1) 제15조(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)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5. 11. 11.>
② ~ ④ (생략)
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장애인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, 2025. 11. 11.>
⑥ ~ ⑨ (생략)
제22조(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5. 11. 11.>
③ 지방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장애인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, 2025. 11. 11.>
② ~ ④ (생략)
제78조(국회 보고 등) ① ~ ③ (생략)
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25. 11. 11.>
- 2) 제10조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~ ⑩ (생략)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를 ‘서울특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현 위원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미뤄 이견 없음.
- 안 제9조제4항은 서울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시의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(역할)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시의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집행 부서의 수용성이 중요할 것임.
- 안 제10조제5항은 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후 정의 실현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.